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전문직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를 확인하고자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호 수용한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고, 면허 또는 등록 절차를 촉진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전문직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대화를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에 다음을 장려한다.
 - 가.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모든 형태의 약정을 협상한다.
그리고
 - 나. 전문적 자격, 면허 및 등록의 인정에 대한 그러한 약정을 개발함에 있어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 있는 그 밖의 관련 다자 협정을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관련 직종을 위한 공동의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국제적인 틀을 원용하도록 관련 기관을 장려하고, 제 2 항에 언급된 표준 및 기준은 다음의 사안과 관련하여 포함하고 개발될 수 있다.
 - 가. 교육
 - 나. 시험
 - 다. 경험
 - 라. 행동 및 윤리

마.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바. 활동 범위

사. 현지 지식, 그리고

아. 소비자 보호

5.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면 검토 없이, 외국인 공급자의 본국 면허 또는 공인 전문직 기구 회원 자격에 근거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임시 또는 프로젝트별 면허 또는 등록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다.
또는

나. 적절한 경우, 그러한 면허 또는 등록을 허용한다.

임시 또는 제한된 면허 제도는 외국인 공급자가 적용 가능한 현지 면허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인 공급자가 현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6. 투명성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증명 및 면허를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달리 제공한다.

7. 양 당사국은 제 12.4 조(위원회 및 부속기관)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원회를 통하여 이 부속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8. 이 부속서의 이행을 검토할 때,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사안들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가. 관련 기관 간의 상호인정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그리고

다.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그 밖의 상호관심사안